

# 금호타이어 주식회사

## 보상평가위원회 운영규정

### 제 1 장 총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- ① 본 규정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보상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“경영층”이란 집행임원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임원을 말한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직무와 권한)

- ① 조직 및 임직원 성과평가/보상체계를 수립한다.
- ② 주요 HR 정책을 논의한다.
- ③ 경영층의 임/면 관련하여 검토한다.
  - 가. 상무의 임/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
  - 나. 전무급 이상의 경영층(단,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제외)의 임/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# 제 2 장 구성 및 임기

#### 제 4 조 (구성)

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 1인, 비상무이사 1인, 사내이사 1인으로  
서 이사회에서 정한 자로 한다.

#### 제 5 조 (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 
한 1년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 
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해임된다.

#### 제 6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한다. 이 경우 수인의  
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  
로 그 직무를 한시적으로 대행한다.

### 제 3 장 회의 및 운영

#### 제 7 조 (회의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위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 
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 
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  
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9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2 일전에 각 위원회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

로 통고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 1 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10 조 (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상법 제 393 조의 2 의 제 4 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11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.
  - 가. 조직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관한 사항
  - 나. 중요 HR 정책에 관한 사항
  - 다. 전무급 이상의 경영층(단,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는 제외) 임/면에 관한 사항
  - 라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가. 조직 및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
  - 나. 중요 HR 정책에 관한 결정
  - 다. 상무의 임/면에 관한 사항
  - 라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-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 12 조 (이사회 보고)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- ②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사(위원회 위원인지 여부를 불문함)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

### 제 13 조 (이사회 재의결)

제 10 조 제 5 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 15 조 (전문가의 조력)

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 (규정의 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### 1. 시행일

본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